

#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0.08.12., 개정 2022.02.18.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전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대학 일상회복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02.18.>

## 제2조 (기능)

감염병관리위원회는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겸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02.18.>

- ① 감염병 관리 규정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대학의 주요 정책 결정
- ③ 방역물품 공급 및 방역에 관한 사항
- ④ 감염병 위기 대응계획의 검토
- ⑤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 ⑥ 대학 일상생활회복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2.18.>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⑦항 이동 2022.02.18.>

##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감염병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교내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교내위원은 감염병관리대책본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학생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2.02.18.>
- ③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학생역량지원처장이 한다.
- ④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학생위원은 총학생회 및 대의원 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2.02.18.>

## 제4조 (임기)

- 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 (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학생팀장으로 한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 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 등 지원)

-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2020.08.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